

화학물질로 부터 근로자 보호 강화된다!

- 노동부, 화학물질(88종)의 노출기준 개정을 추진 -

산업현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이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노동부는 지난 7월20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노·사, 관련기관 및 대학 관계자 등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화학물질 취급 작업장에 대한 환경 평가 기준이자 근로자 건강보호 기준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개정방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톨루엔, 망간 등 화학물질(88종)의 노출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개정안은 물질별 독성, 동물 또는 인체 유해성 등 그동안 축적된 새로운 유해·위험 정보와 선진국의 노출기준 수준, 국내 취급 근로자의 노출실태 등을 고려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과 근로자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화학물질의 노출기준의 개정 추진을 위해 '05년도부터 화학물질(126종)을 선정하여 노출기준 개정방안 연구용역(40억)을 수행해 왔으며, 연구를 완료한 톨루엔 등 88종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금년 중 관련 고시를 개정, '07년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05년도 연구를 완료한 화학물질(88종)의 정보에 대해서는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kr/dept/deptbbs/research/research.html>)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내년부터 석면제품 사용금지

-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에 우선 적용, '09년까지 모든 제품 금지키로 -

석면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사용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건축자재용과 자동차용 석면제품의 금지를 시작으로 '09년까지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사용 등이 금지되는 건축자재용은 지붕·천장·벽 및 바닥재용 석면시멘트제품으로 석면슬레이트, 석면칸막이(밤라이트) 등이 대상이다. 석면압출성형 시멘트관은 '08.1.1부터 금지된다. 또한, 자동차용 브레이크라이닝(패드), 클러치라이닝(페이싱) 등도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금지일 현재 유

통·보관 중인 석면함유제품의 양도, 제공 및 사용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후 금지된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석면사용금지방안을 심의하였고, 올 하반기 중에 관계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며 “국민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석면제품 사용을 근절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석면이 인체에 노출될 경우 약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 중피종, 석면폐 등 모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국제암연구학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석면 금지 계획안

- 석면함유제품(중간재 포함) 금지 추진
 - 2007. 1월부터 석면시멘트제품과 석면마찰제품의 제조·수입·사용·양도 및 제공 금지
 - 석면시멘트제품(지붕·천장·벽 및 바닥재용)
 - 석면마찰제품(「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용)
 - ※ 석면이 중량비 1% 이하 함유된 제품 제외 (석면은 천연광물로서 불순물 형태 등으로 제품에 포함 가능)
 -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종류 :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석면시멘트제품 중 '압출성형시멘트판'은 1년간 금지 유예
 - 기존 유통·보관 중인 석면함유제품의 양도, 제공 및 사용은 6월의 경과규정을 둠

50인 미만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노동부는 재해율이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을 위해 '06. 7. 18 ~ 8. 25(6주)까지 2,500여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06. 4월말 전년 동기대비 전체 재해자수가 2,661명이 증가하였고 이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2,611명(98.1%) 발생하여 재해자수 증가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312명이 증가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제조업에서 957명, 건설업에서 517명이 각각 증가하고 있어, 재해증가 추세를 조기 차단하여 안전·보건 취약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히, 재해율이 높은 제조업·건설업을 중심으로 지방노동관서에서 대상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반은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외에도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전문가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발적 예방 활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하였다.

50인 미만 사업장 특별점검 대상 선정기준

- ◆ 재해다발 사업장
 - 최근 2년간 조사대상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 '06년 6월까지 산업재해 2건 이상 발생 사업장
- ◆ 작업환경 여건이 열악한 사업장
 - 산안법 제33조상의 위험기계·기구 사용 사업장
 - ※ 산안법 제33조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 프레스, 전단기,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크레인 등
 - 외국인, 비정규직, 고령자 등 취약계층 다수고용 사업장
- ◆ 기술지원 및 점검 등 행정대상 제외 사업장
 - 최근 2년간 전반적인 안전보건점검 대상 제외 및 산업안전공단의 재정, 기술지원 미대상 사업장
 - 산업안전공단의 재정 및 기술지원 수행 중 개선의 노력이 없는 사업장으로 통보된 사업장
 - 최근 2년간 안전보건개선계획에 관한 기술지도 및 수립 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
- ◆ 자발적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하지 않는 사업장
 - 클린사업장 인증 미신청 또는 클린사업장 비인증, 무재해운동 및 5대 안전작업운동(High-Five) 미실시 사업장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미인증 및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또는 대행기관에 업무 위탁 미실시 사업장
- ◆ 기타 지방노동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무허가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 지도 단속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지청장 朴鍾善)은 관내(영등포, 강서 및 양천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이 함유된 설비나 건축물을 철거·해체 할 때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해체함으로써 작업하는 근로자는 물론 주변 주민들의 건강에도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철저히 지도·단속 하고 있다.

서울남부지청은 '05. 10. 20. 건축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예정 7일 전까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에 석면함유 여부를 기재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자치단체장은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해당사실을 통보토록 되어있어 관내 영등포, 강서 및 양천구청의 협조로 석면 함유된 건축물의 철거는 허가 절차를 받아 위해, 위험이 없이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특히 석면슬레이트 지붕재(7 ~ 13%), 석면천장재(4 ~ 6%), 석면칸막이(6 ~ 12%)등은 석면함유 물질임에도 구청에 접수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고 신고되는 경우가 많아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철거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장 출장하여 산업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석면함유여부를 확인하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청에서는 금년 철거건축물 16개소에 대하여 현장 출장하여 석면함유 여부를 불시점검 하였고, 2005년에는 위험상황신고를 받아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철거·해체한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방림방직공장 철거 시공사인 H건설 대표와, 강서구 발산동 소재 발산택지개발 지구내 지장물 철거 시공사인 S산업개발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한바 있다.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산재예방점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지청장 朴鍾善)은 7월 18일부터 7월28일까지 관내(영등포, 강서 및 양천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중 '05년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29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실시한 지도·점검은 같은 유형의 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특히 재래형 5대 반복형 재해(추락, 협착, 낙하·비래, 충돌, 전도)발생 위험요인 발굴 제거, 사업주의 소속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건강 실태 등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미이행 사항을 확인하여 개선토록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결과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한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는 산업안전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근로자50인)의 사업장으로 자체개선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이나, 안전보건진단명령 등을 실시하여 개선시킬 계획이다. 